#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9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최은석·김종양·박충권

김태호 · 서일준 · 고동진

신성범 · 김형동 · 이인선

박정하 • 김소희 • 김선교

김위상 · 서범수 · 김은혜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7).

한편, 현재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 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 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 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54조의6 및 제5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6(장제보조비 지급 등) ①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4조의7(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 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장 관이 정한다.

제7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의3제1 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4조의6(장제보조비 지원 등)
	①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
	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
	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
	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
	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
	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
	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
	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
	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
	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u>&lt;신 설&gt;</u>	제54조의7(장례서비스) ① 국가보
	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다만, 사망한 보훈보상대상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 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